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5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금지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대상인 동물과 보호·분양의 대상인 동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Ⅲ. 검토의견

1. 동물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금지

현행법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¹⁾과 관련하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역시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⑤ (생략) ⑥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⑦·⑧ (생략)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없으며,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다.</u> ⑦·⑧ (현행과 같음)

1)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민간 동물보호단체 현황,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파악 등 해당 단체의 보호동물 적정관리 유도 등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보호시설의 영리추구 행위 등을 금지하며, 정부·지자체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비교 】

구 분	민간동물보호시설 (비영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직영 센터	위탁 센터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37조	동물보호법 제35조 ²⁾	동물보호법 제36조 ³⁾
운영 주체	개인·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동물병원 등
운영 현황	142여개소 추정	76개소 (직영71, 시설위탁5)	152개소 (위탁보호152)
운영비	기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 시설위탁: 시·군·구시설을 민간에서 임대·운영하는 경우

2)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최근 동물 ‘분양’보다는 ‘입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일부 보호시설운영자가 판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i) 보호시설로서는 보호 명목으로 동물을 유상으로 인수하고, ii) 판매업자로서는 해당 동물들을 분양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이른바 ‘신종펫샵’이 생기고 있으나,⁴⁾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비영리목적의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신종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결격사유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동물보호시설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4) 연합뉴스TV(2023. 9. 26.) 파양 동물 맡아준다더니... 보호소 탈 쓴 ‘신종펫샵’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3단계 제한⁵⁾에 해당하는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는 없는지 엄격한 비례심사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의 경우, 현행 결격사유와의 균형, 다른 비영리시설 운영자와의 형평성, 민간동물보호시설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공공성·동물판매업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의 중대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지되는 것은 동일인이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만일 동물판매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등에 있는 자의 명의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펫샵의 편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수 있음.

5) 국회 법제실,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헌법과 법제」 제15호, 2022.

□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의 형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제한의 강도가 높을수록 위헌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단계이론을 채용하고 있다.

1) 1단계(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 직업선택은 허용하되, 영업시간·장소·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직업활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규율
- 완화된 비례심사로서 공익상 합리적인 이유를 검토
- 다만,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이라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검토.

2) 2단계(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범죄 등에 따른 결격사유, 전문자격제도 등이 해당
- 엄격한 비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의 보호 검토

3) 3단계(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겸영금지, 겸직금지 등이 해당
- 엄격한 비례심사로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의 보호와 명백·확실한 위협의 방지 검토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므로 변칙 영업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변칙 영업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다른 개정방향성으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